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1063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이종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성경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2. 22. 체결된 7,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280 대여금 사건(위 판결은 2017. 4. 26. 선고되어 2017. 5. 19. 확정되었다)의 판결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충남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2018.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8. 1.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8,9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2017. 12. 22.경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거나 C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7,000만 원을 매도인측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C의 어머니인 피고가 2017. 12. 22.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2,7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 중 7,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대전지방법원 2020개회22546 개인회생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7,000만 원을 소명하라는 2021. 2. 19.자 보정권고를 받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2021. 3. 16.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여 2021. 3. 17.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 피고가 2020. 10.경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C가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본 사실만으로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첨부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2억 2,700만 원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7. 12. 20., 중도금 2,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8. 1. 15., 잔금 1억 8,700만 원의 지급일은 2018. 1. 30.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18. 1. 30. F조합으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피고의 남편인 G(2019. 10.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은 2010년경부터 매월 약 182만 원에서 221만 원의 연금과 국민연금(1998. 6.경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을 수령하는 등 일정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C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G의 보험급여원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매대금 중 7,000만 원(= 위 2억 2,700만 원 - 위 1억 5,7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액 상당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사실조회로 신청한 H조합, 아산우체국, I은행,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또는 매도인측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C가 개인회생 폐지 신청을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떤 경위로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7. 12. 22.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보듯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7. 12. 20.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될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⑧ 원고의 고소로 C가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은 적이 있어 피고는 자료 제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위 G의 연금 수입 등과 사망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G이 매매대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⑨ C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위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